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June 15, 2026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세제개선 관련 주요 내용•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국세청,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안내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기본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2호, 2026. 5.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 5. 2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0호, 2026. 5. 2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361호, 2026. 5. 29.)	
03 최신 예규·판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는 심판원 결정에 따라 다른 과세연도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이 불일치하는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01

Tax news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세제개선 관련 주요 내용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정상화 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등을 거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발표하였는 바, 이번에 확정·발표된 1차 과제 중 세제개선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비과세·감면 제도의 장기적·관행적 일몰 연장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체 조세지출 원전 전면 재검토, 지원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적극 폐지	재경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법인을 이용한 재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 해당 여부 전수 점검	국세청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및 개선	미술품 기부 현황 점검 진행 및 기부물품 시가 평가방법 명확화 등 관리체계 개선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등 탈세정보 수집 강화,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증여거래·편법거래 등 조세회피행위 집중 조사	국세청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 악용 차단	과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면세한도 이하로 반입하는 방식의 편법 수입 시도 지속 → 사이버몰 보유 원천거래정보를 활용 합산과세 대상건에 대한 선별·심사 강화	관세청
할당관세 제도개선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기준 강화, 반출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재경부
저세율 할당관세 제도 부정 이용 차단	세관장 반출명령 근거 신설 등 반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할당관세 부당적용·수입가격 왜곡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조사 및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수사 진행	관세청
수입수산물 할당관세 제도 부정이용 차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물량에 대해 45일 내 반출을 의무화하고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지속 적발 시 할당관세 배제 등)	해수부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신뢰 강화를 위해 청렴과 공정·개방적 인사운영·효율과 혁신·투명한 제도 구축·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의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개혁방안의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렴과 공정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자체 윤리강령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지정 및 지정장소 외 업무 접촉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 보고의무 부여 - 외부인의 조세심판 관련 부적절한 행위(조사진행에 관한 정보입수행위, 처리시기 조정 등 사건 관련 청탁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 • 심판조정과의 외부접촉행위 전면차단 → 완전한 White Zone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비공개 및 외부 유선전화 차단·모든 외부인과 접촉 금지 - 심판조정과 배치 전 서약서 징구 및 일반직원보다 강한 책임 부여 • 대리인 소통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한 소통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실 방문설명 사전신청제 도입 → 비공식적 의사소통 차단 - 선임된 대리인 외 타인(전관 포함)과의 업무관련 의사소통 전면 금지 • 비상임심판관 회의일정 비공개 및 불필요한 회의 일정변경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참석 날짜 외부 비공개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노출 시 해당 비상임심판관을 심판관회의에서 제척 -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일정 변경 및 심리연기 금지
재산신고 대상 및 취업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취업심사 대상에 7급 이상 공무원 포함
직원 보호조치 적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청탁·폭언 등 사례별 대응 절차 수립 및 보호조치 요청 절차 체계화 • 상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발생 갈등·애로사항의 즉시 상담·지원 등
감사 및 청렴관리 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설치 및 운영 • 총리실 본부(법무감사담당관실) 내 소속기관 전담 감사팀 신설

2) 개방적 인사운영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신규 인력확대 및 전문인재 육성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편중된 외부 인력 의존도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 심판실무 등 핵심 역량 중심의 신규인력 전담 교육 프로그램 마련
상임심판관 등 인력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복잡·전문화 및 심리기간 단축 요구 등 대응을 위해 상임심판관 등 조세심판 인력 확대 추진 •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한 인사의 다양성·전문성 강화

3) 효율과 혁신

추진 과제	주요 내용
AI 기반 스마트 조세심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조사서 작성 등에 AI 도입 (2026년 9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이유서와 답변서 업로드 시 AI가 쟁점분석 및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 청구인을 위한 AI 청구이유서 작성 및 검색엔진 도입 (20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이유를 대화형으로 입력 시, 청구이유서 자동작성 및 유사 선결정례 검색
소액 및 장기미결사건 신속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장기미결사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 직결 소액사건은 별도관리대상 지정 (상반기 내 180일 초과 소액 사건 모두 처리) -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 • 장기미결 처리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담당자 개별책임제에서 벗어나 과장책임제(부서단위 운영책임) 도입 - 심판부별 미결사건 정보 DB화 및 사건별 처리현황의 주기적 관리·점검 - 장기미결사건에 관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항목 도입
고액사건 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액사건은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사건조사서 내부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조사서 원문의 내부 업무망 등재·전직원 열람 등 사건조사서 공유기반 조성 • 구성원이 공감하는 우수 사건조사서 평가제도 도입 • 유사, 동일 쟁점의 사건은 단일 담당자에게 병합배정 후 해당 인력이 전담 처리

4) 투명한 제도 구축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심판관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동의 하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면 공개 원칙화 • 조세심판관의 의견서 작성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심판관은 회의 시 자신의 판단근거를 문서형태로 정리한 의견서 작성·서명, 의견서는 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건관리 절차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의무화하여 방어권 보장·심리 공정성 확보 •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일마다 사건진행현황·지연사유 등을 자동 통보하는 '알림서비스' 개시 - 사건조회항목(진행단계·항변서 접수현황 등)을 세분화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정보 제공 • 공정한 사건배정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무작위 배정 시 배정시간(초)까지 기록하는 등 공정성 제고
인적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관 명단·소속·전문분야 등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공개 • 청구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 명단을 직접 확인하여 기피신청의 실질적 권리 보장

5)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비상임심판관 완전 Pool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4명) Pool제 운영(심판관회의 참석 비상임심판관 특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심판관 전원을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노출 차단
비상임심판관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36명 수준의 비상임심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전 Pool제의 실효성 확보
비상임심판관 평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심판관 신규 또는 재위촉시 추천위원회 신설·운영 • 내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비상임심판관의 다면적 평가체계 구축

국세청,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이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의 개요는 각각 다음과 같음.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증법 제45조의 3)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구분	주요 내용
과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시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인 주주
증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신고·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상증법 제45조의 4)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구분	주요 내용
과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수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인 주주
증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 및 정산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시 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② 정산 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 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 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신고·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국세청,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안내

국세청이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올해 처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
신고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신탁 제출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초과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및 그 잔액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 계좌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6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 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2)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신고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신고금액 없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달리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 종류·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6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미·거짓신고금액의 10%(1억 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보완요구) 미·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 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미·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국세기본법 (법률 제21712호, 2026. 6.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2호, 2026. 5. 2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수익증권 등의 양도·환매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및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를 구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 5. 2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 5. 29.)

개정 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개정 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신설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0호, 2026. 5. 29.)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361호, 2026. 5. 29.)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재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는 심판원 결정에 따라 다른 과세연도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심2025지0022, 2026. 4. 22.)

쟁점사항

지방세기본법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판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이하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지기법 §50 ①)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지기법 §50 ② 1 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심판원 결정을 쟁점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8년 재산세에 대해서도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임.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선행 심판원 결정은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토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일 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시사점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2012두28254, 2014. 11. 27.), 심판원은 판결 등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이나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쟁점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였으며(조심2025지0561, 2025. 9. 10.), 이번 결정례 또한 단지 법령의 해석에 기초한 재산세 과세 구분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법령 해석상의 다름으로 인해 특정 연도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되거나 재산세 감면 여부가 달라졌더라도, 이는 후발적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정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90일의 기한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부과지 내지 신고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는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국기법 §45의 2 ⑥, 2022. 12. 31. 신설).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이 불일치하는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법안-1072, 2026. 3. 20.)

쟁점사항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법인이 적격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특례 요건의 하나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법법 §47의 2 ① 2호, 이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사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격 현물출자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지 여부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봄이 문언상 타당할 수 있는 점, 과거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승계해야 한다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승계 요건을 폐지하여 개별적인 자산의 적격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법법 §47의 2 ① 5호, 2017. 12. 19. 개정),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정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현물출자 전에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을 사용한 업종이 피출자법인의 업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와 무관함을 시사하고, 이와 유사하게 과거 기재부도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 9. 20.),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현물출자받아 피출자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업종과 불일치하는 업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사전-2024-법규법인-0902, 2026. 3. 18.)

쟁점사항

현행 조특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와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 §121의 33, 이하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이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의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 즉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조특법상 법인의 '창업'은 법인의 설립 절차가 완료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고(조특법 집행기준 6-0-2 ①), '사업장의 이전'도 사업장의 이전을 개시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을 이전한 날을 말하므로(조특법 기본통칙 61-57...1),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창업'이나 '사업장의 이전'과 유사하게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수 있는 점, 사업장 설치를 완료하여 제품 생산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사업장 설치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설치를 완료해야만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신설을 검토하는 법인은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공장·생산설비 등을 완공하고 제품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유권해석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규정(조특법 §99의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조특법 §104의 24)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조특법 §121의 17)과 같이 일몰기한 내의 사업장 신설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조특법상 감면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